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

의안 번호	6178
----------	------

요구연월일 : 2024. 12. 03.

요 구 자 : 박성준 · 강유정 · 김남희
김성희 · 김용만 · 김용민
노종면 · 모경중 · 박민규
백승아 · 부승찬 · 서미화
송재봉 · 안태준 · 윤종균
전용기 · 정을호 · 정준호
조계원 · 정진욱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김상훈)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회의원 김상훈은 공기업 대표에게 “○○○(공기업명)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 “전문가로서 주변에 신망도 두텁고”, “리더의 자질도 갖추었다.”며 “올해 승진하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친척의 인적사항”이라며 “소속, 이름, 사번”을 문자로 보내는 등 부정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2024년 1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됨.

다. 부정한 인사청탁은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박탈하고,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임.

라. 국회의원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회의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기관장이 국회의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의원 김상훈은 이를 악용해 공기업 대표에게 직접 영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공기업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마. 국회의원 김상훈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

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앞장서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되려 정책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자행했다는 점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것임.

바. 이는 ‘공기업 사유화’라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의 대통령실과 경상남도 산하기관 인사 청탁,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과 전횡 의혹 등 윤석열 정부와 정부여당에서 인사청탁과 인사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임.

사. 이에 국회의원 김상훈을 「대한민국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